

고양장항 A-2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3. 31]

1. 건설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한강5로 10(장항동) [주택관리번호 2026000099]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온라인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MyMy서비스" 적용 단지입니다. 자세한 활용 방법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장항 A-2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3.31.(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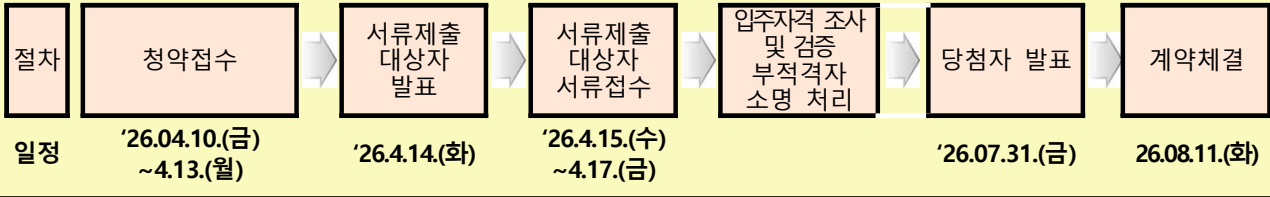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6세 이하 : 2019.4.1 이후 출생(태아포함)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과 혼합된 임대주택으로**, 금번 공고는 최초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A-2블록 : 총 650호 (공공분양 371호, 행복주택 279호)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LH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예비자발표 및 계약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역건, 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하단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태	공급 대상	공급 호수	모집 예비자	세대 당 계약면적(m ²)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구조 및 난방	최초 입주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천원)		임대 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 공용	주차장		계	계약 금	잔금							
46A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8	40	46.70	20.36	7.94	35.38	110.38	89,200	4,460	84,740	371,660	(+) 44,000	133,200	151,660	10~ 14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 역 난방	'26.4
46A-1 (주거 약자)		11	20										(-) 75,000	14,200	590,410			
55A		10	40	55.92	24.38	9.51	42.37	132.18	106,800	5,340	101,460	445,000	(+) 53,000	159,800	180,000			
55A-1 (주거 약자)		9	20										(-) 89,000	17,800	704,580			

- 금회 모집은 최초 모집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 세대 및 기계약 세대의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할 공가에 대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55A형 주택의 경우 현재 예비자 대기 중(14세대)임에 따라, 금회 모집공고 당첨 시 후순위 예비자로 선정되며, 입주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고양장항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고양장항 A-2블록 행복주택은 발코니확장형, 공간구성은 기본형(55A, 55A-1, 55B형 침실2/알파룸 분리), 바닥재는 기능성 룠카펫으로 시공하며 빌트인가구로 가스쿡탑(3구형)이 설치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46A-1, 55A-1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사람(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이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㉓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㉒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㉒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①-㉓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 ①-㉒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①-㉒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 ② 혼인가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0%	10,562,642원 이하	120%
5인	9,326,985원 이하	100%	11,192,382원 이하	120%
6인	9,906,263원 이하	100%	11,887,516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2인	0인	13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3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40%	413,000,000원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452,897원 이하	7,039,524원 이하	7,626,151원 이하	8,212,778원 이하
3인	8,168,429원 이하	8,985,272원 이하	9,802,115원 이하	10,618,958원 이하	11,435,801원 이하
4인	8,802,202원 이하	9,682,42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11,442,863원 이하	12,323,083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0,259,684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12,125,081원 이하	13,057,779원 이하
6인	9,906,263원 이하	10,896,889원 이하	11,887,516원 이하	12,878,142원 이하	13,868,76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본인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30% 우선 선정 → 순위 →추첨

*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청자는 공급호수 30% 범위에서 우선 선정 (경쟁 시 순위→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3.31.)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자

-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고양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이외 지역)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 발생 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고양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p>'26.04.10(금) 10:00 ~'26.04.13.(월) 17:00 ※토, 일요일 포함</p> <p>※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p>	<p>'26.04.14.(화)</p> <p>※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p>	<p>'26.04.15.(수) ~'04.17.(금) 10:00~17:00</p> <p>※ 현장 및 우편접수장소 (11787)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p>	<p>'26.07.31.(금)</p> <p>(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ARS(1661-7700)</p> <p>※ 예비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플러스 별도게시</p>	<p>■ 전자계약 '26.08.11(예정)</p> <p>※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p>

-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 * 청약신청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시 우편송부(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에서 또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 위의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 55A형은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에게 계약체결 안내 후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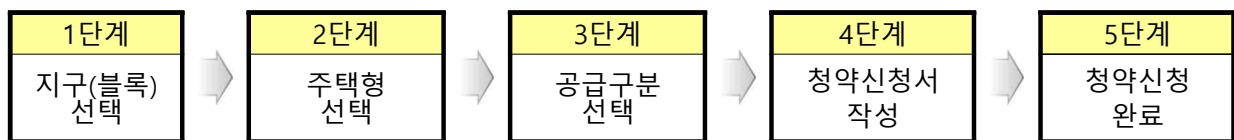
○ 인터넷(PC) 신청자

- * 청약방법 :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 → 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어플) 신청자

-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건설임대
- 앱 ("LH 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6.04.10(금) 10:00시부터 26.04.13(월) 17:00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청약 방법

-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신청
 - 신청접수일 등 모집일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업무시간(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자에 따라 「5. 신청서류」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현장접수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를 전체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미비시 접수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같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장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교통편	의정부 경전철 [어룡역] 1번 출구나와서 직진 후 좌회전(50m)
약도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6.04.14(화)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 → 『청약』 클릭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청약결과확인』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클릭

- 서류제출 방법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방문접수, ③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서류제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 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를 통한 서류제출은 "5. 신청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시 유의사항(PC·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 * LH청약플러스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현장접수는 마감시간 전까지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플러스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 보기 화면 캡처,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 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또는 등우편으로 접수 받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일반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같음하며, 서류 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6.03.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MyMy서비스 이용 가이드 영상 참고하기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LH 공식 Youtube 채널에 있는 MyMy서비스 가이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MyMy서비스 이용 안내>

▶ 공공 마이데이터와 MyMy서비스란?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MyMy서비스란, 서류제출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①종이서류 발급·제출 없이 임대주택 청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를 한 번에 묶어서 손쉽게 제출하고, ②수기로 서명해야 했던 서류(ex.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전자서명이 가능한 LH의 임대주택 청약 간편화 서비스입니다.

▶ MyMy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 인원 : 서류제출대상자인 신청자 및 세대원

※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류제출 서비스는 세대원 전원이 동의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대상 서류 : 제출 대상 서류 중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O" 표시가 된 서류

- 신청방법

① 현장접수 시 :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접수를 하는 경우 MyMy서비스 전자서명은 이용 불가능 합니다. (수기서명 및 제출 필요)

② 온라인접수 시

· (신청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 "체크" → (세대원 있는 경우) 세대원 제공 요구(=MyMy서비스 동의) 요청

※ 신청자는 청약플러스 내 SMS 발송 기능으로 세대원에게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제공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비용 본인 부담 없음)

· (세대원)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센터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세대원본인인증 → "본인정보 행정정보 제공요구서"에 제공요구(=동의) "체크"

- 주의사항

①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만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고문 상 "MyMy서비스 이용" 항목에 "X" 혹은 "불가"로 표기된 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부 서류(ex.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하여 추가 정보 기입(입력)이 필요하며, 추가정보를 기입(입력)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입(입력) 시 연계가 불가능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MyMy 서비스 이용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전자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전자 서명)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전자 서명)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 (전자 서명)	1통
[선택]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	· (제출대상)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을 희망하는 자 · (제출방법) 온라인(청약플러스) / 오프라인 두가지 방식 모두 가능 ※ (주의) 세대원은 전원이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에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서명)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1통

<p>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한부모 가족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출생자녀 또는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 사실 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O	1통
<p>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O	1통
<p>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p>	<p>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1통
<p>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p>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X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MyMy 서비스 이용	발급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X	행정복지 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O (전자서명)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O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X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 로 발급)	X	행정복지 센터
		· 주민등록표등본	O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O	
	해당자만 제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가입자만 MyMy서비스로 제출 가능)	O	국민연금공단 등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X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O	국세청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X	국세청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 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X	

6. 예비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예비자 발표 : 26. 07. 31 (금)

- 55A형의 경우 대기 중인 예비자 후순위로 예비자 번호 부여받습니다. (선순위 예비자에게 먼저 공급)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예비자의 경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예비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 [기간 : 26.08.11(수) 10:00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열쇠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주택(55A형)은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안내 되오니 참고바랍니다.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p>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받는 자)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지방세정 자료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직권조사 등록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p>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p>	<p>■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data-bbox="284 488 1469 568"> <thead> <tr> <th data-bbox="284 488 651 524">입주자격</th> <th data-bbox="651 488 1469 524">최대 거주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4 524 651 568">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 <td data-bbox="651 524 1469 568">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p>■ 재청약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p>예비입주자</p>	<p>■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p>갱신계약 등</p>	<p>■ 갱신계약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p>■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 				

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주택사업부 확인 철저)

※ 청약 및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여건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5-690호)로 승인된 '고양장항 공공주택 지구 지구계획변경(5차)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이행, 지자체의견,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서남단에 유보지가 위치하며 유보지의 용도는 아직 미정이며 차후 결정됩니다.
 - 지구 밖 남측에 자유로 및 제2자유로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북측에 방송영상밸리, 한류월드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서측에 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지구가 위치하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밖 남서측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지구 밖 남측에 배수펌프장이 설치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주유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 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행복주택·공공분양·통합공공임대·민간임대·민간분양·주상복합용지**가 함께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1개소)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수립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조성되며,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는 사업기간이 2027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있으나, 관계기관 협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연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성공사 일정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 중으로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전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고양장항지구 내·외 환경과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구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자의 사정으로 에너지공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 계획된 수로는 향후 변경될 수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 시까지 수로 정비 등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로 정비 등 공사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 유입수의 수질에 따라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홍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 2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접 공원·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로 본 단지외 인접한 도로 및 보도는 공사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가 입주 전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북측에 위치한 경관녹지는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보행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위치한 근린공원(가칭)은 현재 미확정된 상태로 추후 공원 입구, 공원로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고양장항초	'24.09(개교완료)
중학교	중1	장항중(가칭)	'28.03

- 지구 내 공동주택 블록별 입주시기가 상이하여 해당블록 입주시점에 중학교설립 및 개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구 초·중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건축, 토목】

- 지하주차장 설치 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에 따른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은 2.7m이상, 지하2층은 2.3m이상입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 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중 일부 과대한 크기의 경우 세대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됩니다.
- 주거 약자형 세대는 장애인을 고려한 무장애환경설계(B.F설계)가 아닙니다.
- 지하주차장은 총785대(일반형526대,확장형227대,장애인32)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세탁실) 내 상, 하층간 비상탈출구가 설치되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현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CI로고, 벽체 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간(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어 있어, 별도 지정된 장소(입주 시 안내) 이외에는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이 곤란하며, 중량물 설치 및 못 박음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온수)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창호형태는 실제 시공 시 제작 등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가 필요한 공간(욕상,필로티,욕실,발코니 등)의 바닥 높낮이는 설계도면 치수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 창틀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25~29층(70m 초과)은 이사용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합니다.(국내 이사용 사다리차 최대 높이 70m)

【기계】

- 종합보유센터, 관리사무소,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실외기는 외부에 설치되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지하시설물(펌프실, 열교환실, 전기실, 환풍 등)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열교환실, 전기실, 발전기실, 팩키지펌프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 환기(통기)등의 영향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4동과 205동 사이 관리동 1층에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수관, 소화관, 필로티 오배수관등 동결.동파가 우려되는 곳에는 동결.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발열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료등 유지관리비는 공동으로 부과됩니다.

- 본 단지는 대피공간 및 경량칸막이가 없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피난층까지 대피가 가능하도록 2층 이상 전세대에 하층세대로 탈출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가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될 예정이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최하층 세대는 천장에만 설치, 최상층 세대는 바닥에만 설치)
- 일부 필로티 또는 부대시설이 있는 저층부(2~3층)에는 발코니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외부창호 형태 및 발코니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각 세대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으나 에어컨 가동 시 실내로 소음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실내환기를 위한 전열교환장치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드레인을 위한 바닥 배수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배수트랩 및 드레인배관은 타입별, 층수별로 설치수량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관, 배수트랩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으니, 한파가 지속될 경우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각 세대 주방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되며 가스차단 등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팜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 되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급수·급탕계량기함은 엘리베이터홀 PD내부에 설치예정입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1에 매립되는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설치되며, 침실1의 에어컨실내기 매립박스는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되므로 가로형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형박스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근접해 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및 계량기는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가스, 난방, 수도 등의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여 조회합니다.

【전기, 통신】

- 지상에 전기실,발전기실(202동 인근),기계실,환룸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설치됨에 따라 세대별로 소음 및 분진 등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위치를 확인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각종 인입(한전)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인근에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중개폐기 및 변압기가 설치되면, 인접동 및 세대는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리침, 태양광판넬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201~205동 지붕층에는 태양광 판넬이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

면적은 위치 및 형태, 개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접한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되며, 일부동·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리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저층세대는 보안등으로 인해 세대내 영향을 받을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 출차주의 등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1층과 저층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급속1대, 완속38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분전반은 거실통로와 신발장 사이 또는 알파룸에 매입설치 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매입 다운라이트로 설치되어 위치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등으로 설치됨,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대피공간) 전기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204동 옥상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수신여건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203동,204동,205동 등)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동과 205동 사이와 203동과 204동 사이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시야간섭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3동, 205동의 옥상과 지하주차장1층 헬룸-1, 헬룸-5,헬룸-8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 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단,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204동과 205동 사이 1층에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우편함과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1층 출입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단,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부, 재활용품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에 CCTV카메라가 설치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 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이 신발장내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방TV폰은 미설치 됩니다.
- 세대 무인경비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세대의 발코니 및 침실의 창호 측면부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홈 네트워크 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 도어록), 통화서비스(욕실비상콜:주거약자에 한함), 대기전력차단서비스(대기전력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차량통제시스템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날씨정보(온도, 미세먼지정보)가 표현됩니다.
- AI 스피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IoT 가전 기기는 별도 구매하여야 하며, IoT 가전 연동 및 일부 서비스는 각 스마트홈 사업자 연동 가능 모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정형으로 설치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단지계획 및 조경】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거리가 상이하여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또한 입주민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 인접 세대는 악취 및 해충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복합 놀이터 및 물놀이 시설과 인접 세대는 일정시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 입주지원시설(A/S센터 등)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p>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세대는 입주 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용이하지 않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전면, 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이나 민원을 통해 조경수의 추가식재나 식재이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태양광 모듈 전지판 설치 등은 낙하위험성 등으로 원칙적으로 설치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시설계획, 내부구조 및 마감 등은 향후 사업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의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주거시설과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제한 있음.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 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향충격음 차단성능	★★★★
중향충격음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 구조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3) 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름 조성	-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4) 생활환경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홀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센트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빗물관리	-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절수형 기기 사용	★★★

5) 화재·소방관련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내용	적용여부	구분	내용	적용여부
건축 부분	단열조치 준수	적용	기계 부분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기계 부분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전기 부분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조명설치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고양장항 A-2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420-82-00573)	씨에이이엔씨(주)(136-81-12051) 성보건설산업(주)(220-81-27029)	-	(주)건축사사무소광장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편의증진시설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도로명 주소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1층 임대공급운영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3.31.



경기북부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1.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2.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묶음정보 서비스명: 임대주택 청약(입주자격 검증)
- 묶음정보 이용목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 제공요청 유형: 일회성 제공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 정기적 제공 요청 상세
 - 주기: 해당 없음
 - 종료시점: 해당 없음

3.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아래 본인정보 중 신청하신 임대주택 유형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만 제공 요구합니다.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열람대상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주민등록상태, 현주소, 도로명주소-현재 2. 세대원정보 - 변동사유, 변동일, 성명, 세대주관계, 세대편입일, 주민등록번호 3. 세대주정보 - 등록상태, 변동사유, 변동일, 성명,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4. 주소이력 - 변동사유, 변동일, 전입일, 주소, 도로명주소-이력
2	외교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외국인정보 - 국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체류기간, 체류자격 2. 체류지변경사항 - 변경일자, 주소
3	법무부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가족사항 - 국내거소신고번호, 관계, 성명, 국적 2. 거소이전사항 - 국내거소, 변경일자, 신고일자 3. 국내거소신고번호 4. 체류기간 5. 거소인정보 - 국적, 생년월일, 성명, 성별, 체류상태
4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증명서	○ 증명정보 - 등록번호, 선정일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성명, 세대주와의관계
5	법무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국적 2. 생년월일 3. 성별 4. 여권번호 5. 출입국일자 - 출국, 입국 6. 성명
6	외교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증명정보 - 귀국예정일자, 대상자주민등록번호, 등록공관명,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등록기준지, 등록일자, 병역진행상태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 영문명, 영문성, 재외국민등록번호, 체류국내주소, 체류목적명, 체류자격명, 최초입국일자, 한글성명
7	법원행정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특정등록사항 - 등록기준지,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 출생년월일, 성별, 폐쇄구분명 2. 가족사항 - 가족관계명, 기타 성명, 기타 출생연월일, 기타 국가명, 가족 성명, 가족 출생년월일, 가족 성별, 가족_본, 가족 폐쇄구분명, 가족_주민등록번호 3. 일반등록사항 - 기록사건명, 항목명, 항목내용
8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1. 납세자정보 -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2. 개업일자 3. 사업자등록일자 4. 납세자정보 -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발급
9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발급 5. 폐업일자-발급 6. 폐업구분 7. 공동사업자-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8.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코드, 사업자상태
10	국세청	휴업사실증명	1. 납세자정보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납세자주소, 사업장소재지 2. 업태 3. 종목 4. 개업일자-발급 5. 휴업기간 6. 공동사업자-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7. 사업자상태 - 사업자상태코드, 사업자상태
1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기본정보 -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발급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유효기간시작일, 유효기간종료일, 주소1, 주소2, 주업종
12	보건복지부	자활근로자확인서	○ 증명정보 - 대상자성명, 사업내용, 세대주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참여구분
13	병무청	병적증명서	1. 미필자 - 모든병역사항 2. 군필여부 3.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군필자 - 입영일, 전역일
14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 기준년 2. 기준일 3. 개별주택가격 4. 토지면적 5. 토지산정면적 6. 건물연면적 7. 건물산정연면적 8. 동번호
15	국토교통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 필증	1. 신고사항변경내역 - 이륜자동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주소-발급, 신고일자, 확인기관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2. 제원정보 -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총중량, 기통수, 배기량, 연식, 길이, 높이, 너비, 비고
16	국토교통부	일반건축물대장	1. 일반건축물대장 기본정보-일반 - 건축면적, 건폐율, 고유번호, 구역, 높이, 대지면적,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명칭및번호, 부속건축물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율 2. 일반건축물대장 기본정보-일반공적공간정보 - 조경면적 3. 일반건축물대장 기본정보-일반 - 주구조, 주용도, 지구, 지번, 지붕, 지역, 층수 4. 일반건축물대장 기본정보-일반일자정보 - 사용승인일자, 허가일자, 착공일자 5.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정보-일반 - 관련지번,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주소-발급, 소유권지분 6.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정보-일반 -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7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 결과과거내역표시 - 결과과거내역표시 2. 자동차이력정보 - 주등록, 부기등록,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등록일자, 접수번호 3. 자동차소유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등록사항확인일, 사용본거지-발급 4. 자동차등록정보 -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말소등록일 5. 자동차기본정보 -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도, 연식, 색상, 출처구분 6. 자동차접수정보 - 최초등록일, 최초접수번호, 제작년월일
18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을)	1. 저당된자동차등록번호 - 종류, 자동차등록번호, 설정일자, 말소일자 2. 자동차소유자 - 성명-명칭, 주소-발급,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자, 저당권말소일자 3. 저당정보 세부사항 - 순위, 구분코드, 구분, 사항란, 등록일자 4. 저당권자 - 성명-명칭, 주소-발급 5. 채무자 - 성명-명칭, 주소-발급 6. 을부번호-발급 - 을부번호-발급 7. 저당권설정접수번호 - 저당권설정접수번호
19	국토교통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1. 기본정보-전유부 - 건물명, 고유번호,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위반건축물여부, 지번 2. 소유자정보-전유부 - 변동원인, 변동일자,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발급, 주소-발급 3. 전유부분정보-전유부 - 구분-발급, 구조, 면적, 용도, 층별
20	국토교통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1. 기본정보-표제부 고유번호,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지번, 건물명,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산정용면적, 용적율, 부속건축물층수, 부속건축물면적, 지역, 지구, 구역 2. 공적공간정보 조경면적, 공적공간면적 3. 일자정보 허가일자,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4. 건축물현황정보-표제부 구분-발급, 층별, 구조, 용도, 면적
21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1. 민원인정보 - 성명, 민원인주민등록번호, 상호, 민원인사업자등록번호,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법인명, 민원인법인등록번호, 법정동주소 2. 발급정보 - 발급일자, 소득금액증명구분 3. 증명내용 - 소득구분, 귀속년도, 상호, 소득증명사업자등록번호,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4. 증명내용 - 소득금액증명합계 -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5. 증명내용 - 귀속년도기간
22	근로복지공단	개인별부과고지산출 내역서(고용)	1. 성명 2. 생년월일 3. 월평균보수정보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고용보험월평균보수, 발급일자
23	근로복지공단	개인별부과고지산출 내역서(산재)	1. 성명 2. 생년월일 3. 월평균보수정보 사업장명,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적용시작일, 적용종료일, 고용보험월평균보수, 발급일자
24	고용노동부	일모아 사업참여정보	○ 참여정보 - 순번, 사업명, 수행기관명, 사업유형,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참여상태
25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자격득실확인정보 -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2. 확인청구자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26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 장가입자)	1. 가입자정보 - 사업장명칭, 성명 2. 가입자정보, 주민등록번호 - 앞번호, 뒷번호 3. 납부내역 - 소득_고지금액_건강보험료, 소득_고지금액_장기요양보험료, 소득_고지월, 소득_납부금액_건강보험료, 소득_납부금액_장기요양보험료, 직장_고지금액_건강보험료, 직장_고지금액_장기요양보험료, 직장_고지월, 소득_납부금액_건강보험료, 소득_납부금액_장기요양보험료, 보험구분, 4. 발급항목 - 발급일자, 보험구분 5. 확인년도
27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보험자격이력 - 조회시작일, 조회종료일, 상실일자, 순번, 사업장명, 취득일전근일, 직종명, 접수번호, 비고
28	공무원연금공 단	공무원연금내역서	1. 인적사항 - 성명, 임명일, 주민번호 2. 재직기간 - 합산기간, 급여재직기간, 퇴직수당재직기간 3. 퇴직급여계산액 - 개정전-퇴직급여재직기간, 개정후-퇴직급여재직기간, 개정전-퇴직수당재직기간, 개정후-퇴직수당재직기간, 개정전-퇴직일시금선택시-퇴직일시금, 개정후-퇴직일시금선택시-퇴직일시금, 개정전-퇴직일시금선택시-퇴직수당, 개정후-퇴직일시금선택시-퇴직수당, 개정전-퇴직연금선택시-연금월액, 개정후-퇴직연금선택시-연금월액, 개정전-퇴직연금선택시-퇴직수당, 개정후-퇴직연금선택시-퇴직수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선택시-연금월액기간, 퇴직연금공제일시금선택시-공제일시금기간, 개정전-퇴직연금공제일시금선택시-연금월액, 개정후-퇴직연금공제일시금선택시-연금월액,

연번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상세항목 (항목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공자성명, 전공사상시기, 훈격상이등급, 주소정보 2. 신청인 - 유공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3. 등록일
41	국가보훈부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확인정보 -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유공자와의관계, 유공자성명, 전공사상시기, 훈격상이등급, 주소정보 2. 신청인 - 유공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3. 등록일
42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확인정보 -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유공자와의관계, 유공자성명, 전공사상시기, 훈격상이등급, 주소정보 2. 신청인 - 유공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3. 등록일
43	국가보훈부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확인정보 -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유공자와의관계, 유공자성명, 전공사상시기, 훈격상이등급, 주소정보 2. 신청인 - 유공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3. 등록일
44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확인정보 -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유공자와의관계, 유공자성명, 전공사상시기, 훈격상이등급, 주소정보 2. 신청인 - 유공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보 3. 등록일
45	국가보훈부	생업지원대상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기간 2. 성명 3. 생년월일 4. 전화번호 5. 주소 6. 대상구분 7. 관계 8. 보훈번호 9. 등록지관할지방보훈청또는보훈지청 10. 발급일자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제공 요구합니다 (예)		제공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오)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 **정보주체 유의사항:**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만 14세 미만인 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